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4-03-28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녹십자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1.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기본자세)

1.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여야 한다.
  -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

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1.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업무감사권)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6) 이사회 소집 청구 및 이사의 보고 수령
  -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1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무)

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책임)

1.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의견표명)

1.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제2장 구 성

### 제9조(선임 및 구성)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

1.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기)

1. 감사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당해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

### 제12조(회의)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13조(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주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15조(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4.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제17조(회사의 정보제공 등 지원)

1. 회사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개최 이전에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후 본점에 비치한다.

### 제4장 감사인의 선임 등

#### 제19조(선임)

1.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한다.
2.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제20조(감사인 평가)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정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2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내지는 규정에 정한 감사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제23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1. 위원회는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제22조에 의하여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의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 2)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 3)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 제24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제25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1.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7조(감사위원회 지원부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원
  - 2)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 지원
  - 3) 감사보고서 검토지원
  - 4) 감사인선정 및 평가지원
  - 5)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 정리, 의사록 작성,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

- 6) 기타 위원회가 지시한 업무
3. 위원회는 전담 지원부서의 설치·운영, 전문 지원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8조(감사록의 작성)**

1.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9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3.28.일)